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478

발의연월일: 2021. 9. 8.

발 의 자:김예지 · 권명호 · 김선교

김성원・김승수・김용판

이 영ㆍ이종배ㆍ지성호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획된 공간"을 "구획된 공간 및 연속된 공간"으로,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디지털로 제작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7. "만화가"란 만화 창작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3(실태조사) ① 정부는 만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만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 1. ------의 구획<u>된 공간</u>에 실물 또는 ----구획된 공간 및 연속된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 공간-----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 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 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 -----디지털로 제 긴 것을 말한다. 작된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만화가"란 만화 창작을 업 <신 설> (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 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 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3조의3(실태조사) ① 정부는 <신 설> 만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만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